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2
----------	-----

제출년월일 : '96. 6.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의 보완과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률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함 (안 제19조)
- 나. 건축물의 신·증축으로 인한 취득신고시에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주거용건축물은 661㎡ 초과, 기타 건축물은 495㎡ 초과)하는 경우에 도급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도록 함 (안 제20조)
- 다.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20조, 안 제29조, 안 제38조, 안 제49조, 안 제53조, 안 제66조, 안 제78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8조(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신축·개축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격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표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제155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종료일 또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경정장 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242조(재산세 등의 준용) ①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183조, 제184조, 제189조 및 제191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토지가액의 적용) ①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전연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할 때까지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③내무부장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169조(위원회의 임무) ①위원회는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금액·재해·농작물의 거래가격·생산량 기타 농지세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 건설업법

제4조(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

<개정 '94. 7>

1. 삭도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공사
2.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내부위임규정”을 “사무위임규칙”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자동차등록에”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에”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108조제5호”를 “법 제108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9항중 “자진신고납부”를 각각 “신고납부”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농지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영 제169조제1항에 의한 농지세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8절의 제목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다음달 5일까지”를 “다음달 10일까지”로 하고, 동조 동항중 “마권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3조본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법 제184조의”를 “법 제242조제1항의”로 한다.

제78조본문중 “목욕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를 “목욕용수 및 기타 용수로 이용하는등”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생략)</p> <p>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p> <p>1~7 (생략)</p> <p>8. <u>마권세</u></p>	<p>제3조(세목) ①(현행과 같음)</p> <p>②-----</p> <p>1~7 (현행과 같음)</p> <p>8. <u>경주·마권세</u></p>			
<p>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생략)</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 사무의 <u>내부위임규정</u>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부과징수사무중 <u>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자동차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다만, 2륜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세부과징수 사무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변경등록을 동장에게 신청할 경우의 시세부과징수사무를 제외한다.</p>	<p>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p> <p>----- <u>사무위임규칙</u> -----</p> <p>③-----</p> <p><u>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에</u> -----</p> <p>-----</p> <p>-----</p> <p>-----</p> <p>-----</p>			
<p>제19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결정기준일등) ①(생략)</p> <p>②영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토지 : 매년 1월 1일</p>	<p>제19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결정기준일등) ①(현행과 같음)</p> <p>②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p> <p>1. <삭제></p>			

현행	개정안
<p>2. 건물 및 선박 : 매년 1월 1일</p> <p>③제2항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u>과세시가표준액</u>을 결정한다</p>	<p>2. <삭제></p> <p>③----- ----- <u>시가표준액</u> ----- ----- ----- <u>시가표준액</u> -----</p>
<p>제20조 (취득신고 및 신고납부등) ①(생략)</p> <p>1~6 (생략)</p> <p>7. 차량·중기에 있어서는 종류, 연식, 용도</p> <p>8~14 (생략)</p> <p>② (생략)</p> <p>③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u>기재하여야 한다.</u></p> <p>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u>법 제108조제5호</u>와 <u>법 제109조</u>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년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선박, 차량과 <u>중기</u>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p>	<p>제20조 (취득신고 및 신고납부등) ①(현행과 같음)</p> <p>1~6 (현행과 같음)</p> <p>7. ----- <u>건설기계</u> -----</p> <p>8~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하여야 한다.</u> -----</p> <p>④----- <u>법 제108조</u> ----- ----- -----</p> <p>⑤----- <u>건설기계</u> ----- ----- -----</p>

현행	개정안
<p>제66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 때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66조 (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42조제1항의 ----- ----- ----- ----- ----- ----- ----- ----- -----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78조 (납세의무자)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u>목</u> <u>욕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u>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p>	<p>제78조 (납세의무자) ----- <u>목</u> <u>욕용수 및 기타용수로 이용하는 등</u> ----- -----</p>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년 6월 일

내 무 위 원 회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년 6월 일
내 무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6. 6. 5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1996년 6월 11일
3. 상정일자 : 제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1996. 6. 18)
상정, 심의, 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의 보완과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률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 1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함. (안 제19조)

나. 건축물의 신·증축으로 인한 취득신고시에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 (주거용 건축물은 661㎡초과, 기타 건축물은 495㎡초과)하는 경우에 도급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도록 함. (안 제20조)

다.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20조, 안 제29조, 안 제38조, 안 제49조, 안 제53조, 안 제66조, 안 제78조 등)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조준봉)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매년 결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95. 12. 6개정)과 동법시행령 제80조의2('95.12.30개정)에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률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9조)
 - 건축물의 신·증축으로 인한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신고시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주거용 건축물을 661㎡초과, 기타 건축물은 495㎡초과)에 신고납부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 등 인력낭비 방지를 위해 도급계약서 원본을 제시토록 규정하였으며(안 제20조)

-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마권세” 를 “경주마권세”로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 으로 “중기”를 “건설기계” 등으로 변경되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용어를 정비하였고,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행정의 인력낭비를 방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IV. 토론요지 : 생략

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